

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 번호	48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8. 6. 10

발 의 자 : 이상근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(의안의제출·발의)와 관련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완벽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당해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기한을 정하고자 하는데있음.

2. 주요골자

-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의안의 제출·발의시 당해 의회에 제출 기한을 본회의 개의 7일전으로 명시.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2항

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 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생략)</p> <p>② (신 설)</p>	<p>제19조 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.</p>